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속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

■ 김성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4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02. 23.
3. 회부연월일 : 2026. 0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하고, 현장 적발이 없는 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최근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0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③ -----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	-----
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	-----
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	-----
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
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	-----
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	-----
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	-----
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	-----
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	-----
· 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	-----
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	-----
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	-----
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	-----
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	-----

현행	개정안
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u>제62조 또는 제68조</u> 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u>제33조 또는 제34조</u>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④ (생략)	----- -----<u>제62조, 제64조 또는</u> ----- ----- ----- ----- ----- ----- ----- -----. 1. ----- ----- ----- -----<u>제33조,</u> <u>제34조 또는 제64조</u>-----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최근 불꽃축제, 드론쇼, 새해맞이 행사 등 대규모 다중운집 상황에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무단 주차한 채 행사를 관람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속 주행을 전제로 설계된

도로의 안전 기능을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행사 당일에는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현장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보완적 단속 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¹⁾하고 있으며(제64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자를 특정하여 부과하는 범칙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56조²⁾는 제6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2조³⁾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그 행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63조⁴⁾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1)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 의무를 부과함.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2) 「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는 제64조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명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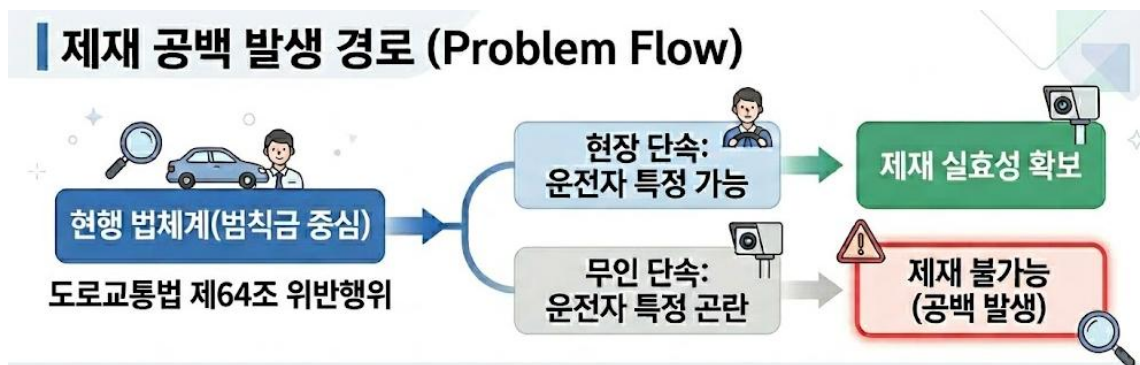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 3) 「도로교통법」 제162조는 제156조 등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3조는 이러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범칙금 부과 대상인 특정된 행위자, 즉 위반행위 당시의 운전자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볼 수 있음.

범칙금 제재는 특정된 행위자, 즉 위반행위 당시의 실제 운전자를 전제로 부과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이와 같은 구조상 범칙금은 특정된 행위자를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차량번호 등 객관적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단속 장비를 통한 단속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무인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범칙금 부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4) 「도로교통법」 제163조는 경찰소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운전자'를 부과 대상으로 함을 전제로 함.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⁵⁾에 제64조 위반행위를 추가하여 무인단속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러한 입법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실제 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긴급정차와 위법한 주·정차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와 관련한

- 5)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위반 행위가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거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소유주(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임.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7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 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은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문제가 있음.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 교통사고, 운전자의 급격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주·정차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무인단속 장비가 정차 시간, 비상등 점등 여부 등 외형적 요소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긴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전·후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처리 부담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긴급 상황과 고의적 위반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단속 기준의 정교화 및 판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과태료 부과는 사후적 제재에 해당하는바, 사고 예방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후속 차량의 시야를 제한하거나 주행 흐름을 방해하여 추돌 사고 등 중대한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행위로, 단순한 사후 제재만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즉각적으로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대규모 행사 시에는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따라서 무인단속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대규모 행사 시 순찰

인력의 집중 배치, 위험 구간에 대한 선제적 교통통제 등 현장 중심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교통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찰청은 현행법령상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가 운전자를 특정하여 부과하는 범칙금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실효적인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정안과 같이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경우 무인단속을 통한 상시적 단속이 가능해져 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4